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 특례 신설〉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9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 특례 신설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4.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 특례 신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책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제2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책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 <u>&lt;신설&gt;</u> | 제28조의3(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 광 |

| 현행 | 개정안                                                                                                                                                                                                                                                                |
|----|--------------------------------------------------------------------------------------------------------------------------------------------------------------------------------------------------------------------------------------------------------------------|
|    | <p>「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안 제2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sup>

####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근거하여 ①경제성분석(수요·편익·비용추정 등), ②정책성분석(해당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③지역균형발전분석(지역 낙후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종합평가를 도출하며,<sup>2)</sup>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예산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국책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임.

통행량 및 사람 수를 기반으로 하는 도로·철도 등 SOC사업의 경우 생활서비스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상 경제성(B/C) 분석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sup>3)</sup>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6조(기본 수행절차)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 경제성 분석 : 수요·편익·비용 추정 등
3. 정책성 분석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5.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등
6. 정책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7조(비용-편익 분석) 수행기관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 순현재가치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sup>4)</sup>에 따라 9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등에 쟁점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처간 이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9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등의 지표를 구하여야 하며 각 지표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B/C 비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1.0이상( $B/C \geq 1.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순현재가치)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값이며 순현재가치가 0이상( $NPV \geq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내부수익률)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③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
2.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3. 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다만, 인구감소지역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89개(38.9%)<sup>5)</sup>에 해당하여 해당 특례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6)</sup>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규정되어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구체적인 사업화를 통해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협의·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참고] 인구감소지역 현황(p.9) 참조

6)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사유에 “인구감소지역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안 제28조의3, 부담금의 감면)

개정안은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련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부담금 등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므로 부담금 등의 감면은 관련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 변경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sup>7)</sup> 부담금 등의 감면규정은 각 부담금의 근거법령

###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가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서 개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리·보전의 공익적 목적, 타 분야와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는 부담금은 개별 법령의 감면대상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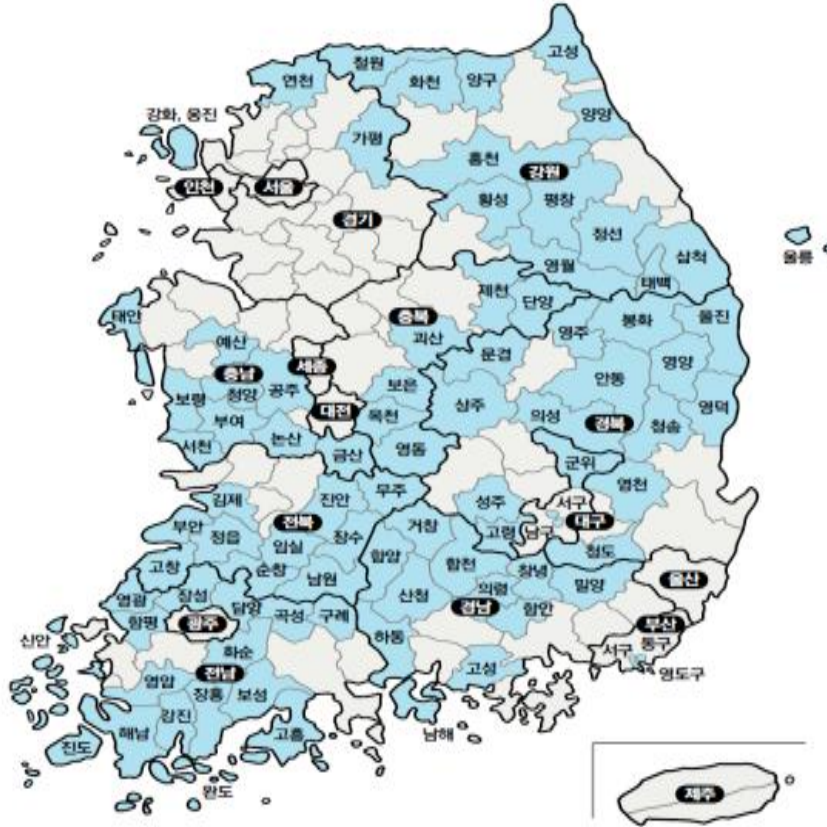
### [부담금 감면 관련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

| 부처 의견 |                                                                                                                                                                                                                                                                                                                                             |
|-------|---------------------------------------------------------------------------------------------------------------------------------------------------------------------------------------------------------------------------------------------------------------------------------------------------------------------------------------------|
| 국토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개발부담금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책 실현 목적과 준조세적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발부담금 감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u></li> <li>-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서는 지자체 귀속분 경감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준공 이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개발 및 용도변경 등을 원인으로 개발단계에서 부과(1회)하는 나머지 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며, 부담금 감면 시 인구감소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 완료 이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고, 주변 도시 및 시설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 필요</u></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동법 시행령에는 부담금의 공제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교통법령에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 내용은 삭제 필요</u></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u>은 <u>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u> 운영되는 제도로서, <u>인구감소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u></li> <li>-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인구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u>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 시설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u>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li> </ul>                                                                                                                                                                                                                                                                   |
| 농림축산식품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u>은 <u>농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u>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li> <li>- 개별법령에 부담금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 및 제도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li> <li>- <u>대체초지조성비 감면</u>은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초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li> <li>- 개별법령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감면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감면조항 신설은 신중할 필요</li> </ul>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u>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u>생태계 복원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u>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또는 제외 규정을 신설할 경우 <u>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u></li> </ul> <p>*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자에게 훼손한 면적에 상응하여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p>                                                                                                                                                                                                                                                          |
| 산림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u>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li> <li>-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시설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산지관리법」에서도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따라서, 「인구감소지역법」에서 감면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한 산지관리법령 제도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li> </ul>                                                                                                                                              |

|              |
|--------------|
| 문 의 처        |
| 02)6788-5336 |

< 인구감소지역 지도 >



| 인구감소지역(89) |                                                                 | 관심지역(18) |                 |
|------------|-----------------------------------------------------------------|----------|-----------------|
|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부산(2)    | 금정구 중구          |
| 대구(3)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1)    | 동구              |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광주(1)    | 동구              |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대전(3)    | 대덕구 동구 중구       |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경기(2)    | 동두천시 포천시        |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강원(4)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    | 익산시             |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경북(2)    | 경주시 김천시         |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남(2)    | 사천시 통영시         |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